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촉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이수정 · 조은경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 · 한림대 심리학

본 연구는 장래 경찰의 소년사건에 대한 훈방제도의 확대를 위해, 지난 일 년 간 시범 운영하여 온 소년범 비행성 평가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범죄심리사를 수사단계에 개입시켜 소년의 비행성을 비행위험요인과 성격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경찰에서 적용할 비행위험요인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 치우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위험요인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비행촉발요인조사를 활용하여 ROC분석으로 준거집단의 변별기준점을 산출한 결과, 경찰에 입건되는 비행 청소년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일관성 있게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선별된 소년들은 성격요인에 있어서도 더 높은 비행잠재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포함된 자료들은 경찰청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소년사건 조사절차에 의거하여, 6인의 범죄심리사들이 수련과정 중에 수거한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운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소년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범죄심리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첫 번째 저자가 수혜한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에 의해 작성되었음.

우리는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터널을 지나,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를 되돌아 볼 겨를 없이 달려온 지금,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일상적인 생활방식마저 와해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관 역시 조금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종래의 기준으로는 불완전한 형태의 가족구조가 즐비하게 되었고, 이런 변화는 구성원들의 인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부적응 현상과 무규범 상태, 소외와 일탈행위의 증가,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 등을 야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의 문제이다. 최근 청소년비행의 추세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청소년 범죄도 이제는 조직화, 흉악화되고 있으며 지능화, 연소화 되어가고 있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으로는 수습이 되지 않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이에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의 책임은 특히 단순한 범죄수사 및 처벌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즉 소년들에게 단순히 죄값을 치르게 하기보다는 이들을 보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요구하게 되었다. 즉 소년의 요보호성에 적합한 사법체제를 구비하라는 주문인데, 이는 성인들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청소년들만의 '변화가능성'이 대전제로서 깔려 있다. 결국 일탈을 저지르는 소년의 문제에 대해 소년의 요구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처우를 적용하는 일이 현대 소년사법의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경찰과 사법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들, 정책미비, 그리고 정책실무자들의 이해부족과 예산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적이지만 이 같은 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청소년 비범죄화 정책의 흐름

서구사회의 경우 193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곡절은 있었지만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국친사상에 입각하여 온정적인 처우를 모색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이윤호, 1999). 이러한 법 사상, 형벌관, 입법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청소년범죄를 성인 형사법원에서 다루어서는 안되며, 성인형사법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절차를 소년법원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인과 청소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절차라고 인식하게 되었다(참조, McCord, Widom, & Crowell, 2000).

요컨대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사법절차는 성인범죄자와 차별하여 다루는 네 가지의 원칙, 첫째, 비수용(Deinstitutionalization), 둘째, 비사법(Deversion), 셋째, 적법절차(Due Process), 그리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정책에 근거한다(Hess, 2000).

비수용은 청소년범죄자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이념의 기초는 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면 스스로 아웃사이더라고 낙인찍으면서 스스로를 범죄의 세계로 떨어뜨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낙인이론에 기초한다.

70년대 초에 메사추세츠 주의 청소년보호국장인 Jerome Miller는 주의 모든 소년교도소, 소년원을 폐지하고 보호시설, 대체가정, 정신요양소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청소년보호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중죄를 범한 청소년에게는 이런 시도가 적합한 처우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 결국에는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달게 된다. 하지만 미국 내 수많은 수용시설들이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프로그램 실행기관으로 대체되게 만든 것은 이를 계기로 해서이다(조준현, 2003). 청소년범죄자들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가지 않고 치료를 겸한 교육시설로 보내지며, 약물치료교육에 참여하거나 위탁보호가정이나 보호시설, 혹은 상담소

로 보내지게 되는 제도를 청소년에 대한 비사법(Diversion)프로그램이라 한다.

적법절차(Due Process)는 미국에서 60년대와 70년대에 특히 강조되었던 제도인데, 소년 범죄자들이 소년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경우에도 성인형사법원에서처럼 증거재판주의, 배심 재판권을 받을 권리,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년범죄자에 대한 비범죄화는, 1977년 미국 변호사협회의 표준소년사법절차를 위한 합동위원회에서 흡연과 음주를 소년법원에서 관할해야 하는 비행사건목록에서 제외시키면서부터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였다(이윤호, 1999).

이렇듯 소년비행을 가급적 비범죄화하여 제재를 과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보다는 일정한 처우를 시행하겠다는 시도는 처우모델에 근거한다. 미국의 경우 특히 1930년에서 1974년까지 이런 철학이 소년사법을 지배하였다. 하지만 70년대 말부터 청소년범죄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널리 보도되면서 범죄소년에 대한 비수용, 비사법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역력해졌다. 따라서 교정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한 처우중심의 판결들은 점차 보다 엄격한 처분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에 대한 비범죄화 정책은 현대 소년사법의 가장 중대한 기조로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이윤호, 1999).

우리나라 청소년 사법체계의 현황

우리나라의 소년법 체제에서는 소년이 범죄를 범하게 되면 이를 검거한 경찰 등의 사법 관리는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를 하고, 범죄소년은 검사에게 송치한다. 우범소년과 촉범소년은 경찰 단계에서 직접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법원선의주의를 취하고는 있지만, 비행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검사선의주의(검사에게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형사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게 하는 경우)를 취하고 있다(오영근, 2004).

미성년으로서의 특수성을 보호할 취지로 법제화된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사건은 소년보호 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결정을 검사가 내리도록 하고 있다(김지선, 2000). 따라서 소년은 범죄를 범하면 경찰에서의 수사단계를 거쳐 검사에게로 송치되고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서 구분된 후,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원에서 각각의 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검사는 수사가 완료되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를 유예시키고,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소년법원에 송치한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소년에 대한 조사과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형사절차에서는 형사법원이 조사관에게 조사를 위촉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판결전 조사를 판단자료로 삼고 있다. 절차상에서만 보자면 우리나라의 소년사법도 나름대로 소년의 비범죄화 철학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현행 소년사법의 체제가 소년들의 재범방지에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현행 청소년 사법체계의 문제점

소년법은 지난 '97년을 정점으로 하여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80년대 초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대비별 소년법은 줄어든다고 보기는 힘들다.

표 1. 최근소년법 검거 및 재범현황 - 경찰백서, 2003

구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소년법	103,655	108,721	123,372	136,323	153,380	151,383	141,523	143,024	131,059	115,210	96,697
재범자	22,628	23,716	29,119	36,644	44,518	50,598	51,058	50,588	48,216	41,749	33,814
비율(%)	21.8	21.8	23.6	26.9	29	33.4	36	35.4	36.7	36.2	35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범율인데, 소년 재범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35%를 상회(표 1)하고 있어 현행 재범방지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 제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소년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유효하지 못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동시에 범죄소년의 경우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부분을 모두 사건화하여 검찰로 기소하는 제도도 관련되어 있다.

지난 통계('01년 91.5%, '02년 91.7%, '03년 91.5%)들은 범죄소년의 90%이상이 사실상 불구속 처리되어 별다른 선도조치 없이 사회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 이는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는 수개월 동안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처분도 없이 해당 소년이 행정 결정만을 기다리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관행은 오히려 죄의식이나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정확한 자각 등을 결여하게 하여 사법절차의 재범에 대한 제지력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2. 소년법 불구속 현황 - 경찰백서, 2003

구분	총계	구속	불구속
1999	141,525	19,354	122,171
	100%	13.7%	86.3%
2000	143,024	14,712	128,312
	100%	10.3%	87.9%
2001	131,059	11,116	119,943
	100%	8.5%	91.5%
2002	115,212	9,536	105,676
	100%	8.3%	91.7%
2003	96,698	8,176	88,522
	100%	8.5%	91.5%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소년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미성년에 대한 처벌의 범위는 급격히 축소되었지만 처벌 대신 이루어져야 하는 선도에 대한 몫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현행 소년보호 방안 역시 시설 내 처우 중심으로, 처벌위주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성인과의 차별성이 없는 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02년 법원의 사법연감에 의하면 소년보호사건의 77.5%를 1호 처분으로 아무런 선도대책 없이 여전히 동 보호자에게 인계(2,3호 처분 병합)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위탁 또는 송치한 경우는 12.6%에 그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보호처분조차도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3).

표 3. 법원 보호사건 처리(2002) - 대법원 사법연감, 2002

처리	보호처분															
	합계	계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 (1호)	1,2호 병합	1,3호 병합	단기 보호 관찰 (2호)	보호 관찰 (3호)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 시설에 위탁 (4호)	병원, 요양소에 위탁 (5호)	단기 소년원 송치 (6호)	소년원송치 (7호)	심리불개시	불처분	타법원에 이송	검사에게 송치	기타
소년 보호 사건	26,677	24,048	4,487	7,869	8,325	4	9	879	5	1,322	1,148	1,120	1,268	37	202	2
구성비 (%)	100	90.1	16.8	29.5	31.2	0.0	0.0	3.3	0.0	5.0	4.3	4.2	4.8	0.1	0.8	0.0

검찰의 '02년 통계(표 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년범의 30.4%만을 기소하고, 기소유예(40.7%) 등 53.2%를 불기소 처분하고 있으며, 16.4%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 69.6%에 달하는 많은 소년들이 사실상 구체적인 처우가 동반되지 않은 채, 사법처리 절차만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 이 점은 선도과 보호가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만을 맛봄으로써 반사회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우려된다. 이처럼 모든 소년범을 사법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는 재범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법체제가 예상보다 엄격하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그릇된 사고를 심어주어 비행의 재발에 전혀 제지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표 4. 범죄소년 검찰 처분결과(2002) - 검찰 범죄분석, 2002

처분 결과	기소							불기소							
	계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년 보호 사건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소계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혐의 없음	최가 안됨	공소권 없음	
계	115,423	35,073	5,534	2,160	27,379	18,925	22	61,403	46,984	3,014	257	4,194	546	6,408	
구성비 (%)	100	30.4	4.8	1.9	23.7	16.4	0.0	53.2	40.7	2.6	0.2	3.6	0.5	5.6	

더구나 시설 내 처우 이외에는 그 어떤 선도방안도 효과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상 소년들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받지 않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도조건부 훈방제도와 같은 보다 혁신적인 처우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청소년 비범죄화 정책에서의 소년조사절차의 의의

온정적인 처우가 중심이 되는 소년사범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다양한 처우가 개발되어야 하고 소년의 비행성에 비추어 적절한 처우방안이 적용되어야만 재범의 방지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행성에 대한 조사절차 없이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처벌의 최소화는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교정처우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Gendreau, 1996)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출소자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던 출소자들에 비하여 평균 25% 내지 30%까지 현저하게 재범률이 감소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분석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교정처우프로그램의 특성이 재소자들의 범죄심리적 특성과 잘 들어맞을 때에 가장 긍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반응성원칙(Van Voorhis, Braswell, & Lester, 2000)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처우내용과 범죄자들의 특성이 잘 들어맞는지 여부는 소년이나 성인 범죄자들의 범죄력과 인성특성을 치밀하게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결국 최근에는 이 같은 발견에 기인하여 선진국의 경우 성인이나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 전 단계 혹은 판결 후 교정단계에서의 조사과정을 매우 심층적이고 치밀하도록 전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의자 혹은 재소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판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정, 교화에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사건조사절차

우리나라에서의 소년사건에 대한 처리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성인사건처럼 소년사건 역시 검사선의주의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소년사건의 수사를 완료하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고 기소유예,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소년법원에 송치하며 그 외에는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우선 경찰은 소년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소년범환경조사서 등을 소년경찰직무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규칙 제 7조에서는 소년경찰의 기본정신으로 처우의 개별화와 과학화를 규정하여, 비행의 구성요건을 단순히 규명하기보다는 소년의 성행 및 환경, 기타 비행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타당한 선도 및 처우를 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경찰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선도 및 처우방안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는 전건기소주의에 의해 반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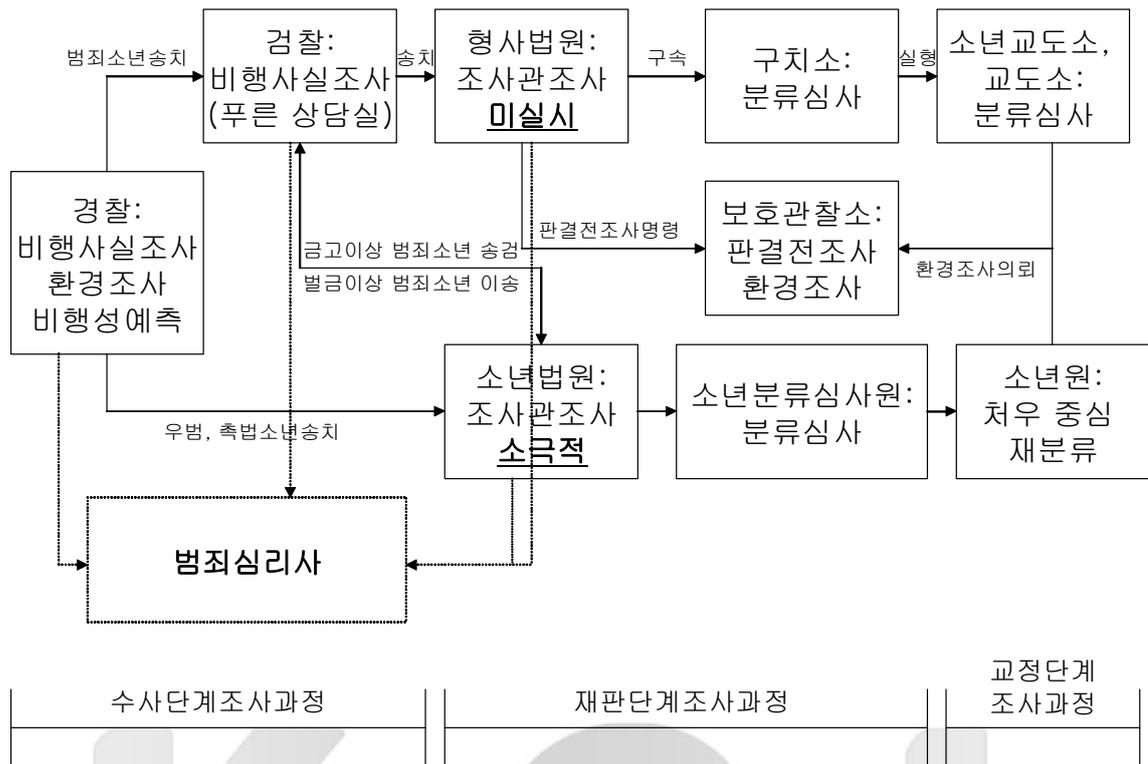


그림 1. 소년사건 조사절차

경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 소년사건의 조사는 거의 모두 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사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혹 서울지검 소년부처럼 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청소년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사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책임감 있는 전문가의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서는 조사관들이 추가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학, 정신의학 전문가 1인씩으로 구성된 조사관들은 현재 모두 사직하거나 퇴직을 한 상태이며 이전 조사관의 업무를 현재는 일반직 사무관이 순환보직에 의해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심리평가 결과를 근거한 인성예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가정환경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조사업무는 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업무는 전체 소년사건에 비하여 보자면 그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소년사건 조사절차는 외국에 비하여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반직 사무관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민간전문가들의 참여 부분을 자원봉사로 제한하고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을 가정하기 어려우며 조사내용 역시 들쭉날쭉하여 표준화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년사건에 대한 판결전 조사의 내용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수거되는 자료와 동일하지 않으며 또한 검찰의 푸른상담실을 통해 수거된 자료가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는 공유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소년조사제도는 따라서 부분적, 중복적, 비전문적이라는 비판을 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년사건 조사절차 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한 조기개입 방안

소년조사제도에 관한 평가연구(오영근, 2004)에서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 옮겨가는 기관마다 중복되는 질문을 한다’는 것과 ‘모든 조사를 처음에, 한번에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소년에 대한 조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경찰에서의 조기심문절차가 지니는 의의는 매우 높다. 이 점을 고려하여 외국에서도 법원 산하에 검사관을 두고 이들이 이미 경찰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심문을 하는 동시에 해당 소년의 환경문제와 인성을 동시에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별화된 처우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기관의 조사양식을 표준화하고 통일하여 경찰단계에서의 소년에 대한 조사결과와 그 이후 단계의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누적되어 최종단계까지 이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유사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조직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소년사건 조사에 관한 민간전문가의 부처를 망라하는 참여는 부처간 중복되는 업무의 충돌을 비교적 부드럽게 무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찰청에서도 소년범 조사 시 범죄심리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현재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미 범죄심리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검찰청이나 법원 소속 조사관들과도 업무 협조를 하고 있고 최근 보호관찰소의 소년사건에 관하여서도 판결전 조사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조사역할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소년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도 청소년의 선도우선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볼만한 대안이다.

나아가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청소년을 입건하지 않고 훈방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대안은 경찰서장의 훈방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근거한 경찰서장의 훈방권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하지 않고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하면 된다. 선도조건을 위반 시에는 언제든지 재입건이 가능하므로 어느 정도의 강제성도 확보할 수도 있다. 경찰서장의 훈방권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훈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법원판결도 경찰의 훈방권을 인정(대판1982. 6. 8.선고, 82도117판결)하고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이러한 훈방권은 적극 활성화 되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때 소년에 대한 훈방제도가 소년의 재범방지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전 선별과정을 통하여 어떤 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 일년 동안 범죄심리사들이 두 곳의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소년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하려 한다. 소년들의 비행성 선별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한 평가도구를 여러 소년사법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공유한다면 소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조기에 한 번 실시하여 행정부처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준비를 위한 전문가들에 의한 비행소년 조사절차 시범 운영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경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훈방제도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범인성 혹은 비행성에 대한 평가 및 판단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데 대하여 검찰을 포함한 관계당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에 의해 소년에 대한 비행성이 치밀하게 조사되어 평가가 상당히 믿을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 소년사건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와 수원 남부 경찰서 등 2개 경찰서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소년조사과정이 시범 운영하였다('03. 10. 1 ~ '04. 9. 30). 소년조사를 담당할 전문인력으로는 범죄심리사들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상담처우는 양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청소년상담시설에서 대행하기로 하였다.

수사 초기에 범죄심리사가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년범의 특성 및 심리,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비행성 평가 및 재범 예측을 실시하여, 장래의 비행위험성을 판별하고자 함이다. 조사의 종료 후 불구속 등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청소년상담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통해, 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구체적인 선도프로그램으로서 지원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개별 소년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의 방향을 찾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선도 및 송치의견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화된 조사절차의 개발과정

앞으로 실시하게 될 수도 있는, 선도를 조건으로 한 소년사건의 훈방권 확대를 위하여서는 소년에 대한 조사절차를 계량화, 표준화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를 위하여서는 두 개 서에서 시범운영 기간동안 수집되었던 소년범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비행위험성이 높은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변별해내는 기준이 필요하였다. 현재는 담당형사에 의한 사건 수사와 함께 범죄심리사들의 평가를 토대로 소년의 범인성 혹은 비행성을 판단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심리사들은 여전히 민간인들이기에 이들에게 허용되는 시간이나 조사의 범위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간략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비행성을 평가해 낼 수 있으며 소년들의 비행위험요인을 보다 민감하게 포착해내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으로 비행성 혹은 범인성을 사전에 선별해내는 도구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이수정, 윤옥경, 2002). 이들 도구들을 살펴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항목들은 인구나사회학적 변수들이나 범죄행위나 전과관련 변수들, 그리고 반사회적 태도와 같은 개인 내적인 위험요인들이다. 따라서 이 같은 요인들에 근거하되 국내 소년범들이 지닌 범인성을 보다 더 민감하게 포착해 낼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 이를 위하여 이미 6개월 이상 씩 범죄심리사로서 분류심사원 등 비행소년 담당 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온 6인의 범죄심리사들이 조사항목의 개발 절차에 참여하였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초점집단(focus group)의 판단에 근거하는 델파이 기법에 따라 (<http://cyber.cheongju.ac.kr/~welfare/data/admin/admin13.html>) 수행된 소년들의 비행요인 선별과정에서는 표 5에 제시된 위험유목들이 중요한 것으로서 평가되었다. 각 항목은 여러 번의 토의를 거쳐 6인의 범죄심리사들이 문항의 적합성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 최종적인 조사도구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라고 부르기로 한 이 도구가 비행위험성이 낮은 소년들을 제대로 선별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비행위험성이 높은 아이들과 낮은 아이들을 제대로 변별하는 최적의 판단기준을 찾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미 비행력 여부를 판단 받고 시설에 수용된 준거집단과 무전과 청소년들을 잘 변별해내는 기준점을 통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경찰단계에서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중 훈방대상이 될 정도로 비행위험성이 낮은 소년들을 선별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들을 사회 내에서 처우 및 선도하는 일이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일단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토대로 문제소지가 있다고 감별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들의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또한 필요하다. 즉 이 같은 진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심리검사인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orey, 1991)를 부가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검사가 사용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PAI 검사는 MMPI보다 문항 수가 훨씬 작으며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읽기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변별기준을 탐색하는 것과 동시에 종합심리검사에서 비행성이 높다고 판단된 피의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피의소년들보다 어떤 정신건강 지표상에서 보다 더 문제행동가능성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1) 경찰 입건 소년과 준거집단 피조사자

서울 송파경찰서와 수원 남부 경찰서 등 2개 경찰서에서 각기 3인의 범죄심리사, 총 6인이 지난 일년간 조사하였던 소년사건은 197건이었다. 이중 초범자는 132명(67.0%)이었고, 재범자는 39명(19.8%), 이 범 이상은 27명(13.7%)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시설수용이 된 적은 없는 청소년들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사건들 중에는 절도와 특수절도가 97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폭행사건으로 54건(27.4%)이었다. 이들 사건들은 사실상 경미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사실상 소년법에 저촉되는 경미한 소년사건들에 대해서만 범죄심리사들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범죄심리사들의 면담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두 기소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4세 미만인 소년들이 10명(5.1%)이었고 만 14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소년들이 187명(94.9%)이었다.

이중 선도조건부 훈방에 해당될 만큼 비행력이 낮은 소년들에 대한 선별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소년사법 절차 상 이미 비행력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변별기준을 설정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준거집단으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형사처벌 대상자 80명(18.6%)과 소년원에 수감된 소년법 처벌 대상자 61명(14.2%), 그리고 아예 전과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들 93명(21.6%)이 준거집단의 피조사자로서 자료수집에 참가하였다. 이때 무전과 청소년들만큼 비행가능성이 낮은 소년들은 기소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직접 훈방되거나 아니면 즉결심판을 거쳐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를, 현재 추진 중인 소년 다이버전 제도는 목표한다. 물론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추후 상담이나 복지차원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측정도구

비행촉발요인조사서 .

6인의 범죄심리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작된 비행촉발요인조사서에서 측정하고 있는 하위유목별 비행성 요인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의 문항에 임의적 방식으로

가중치를 주는 방법보다 각 영역의 문항 수를 하위영역의 중요성 별로 조정하는 것이 더 신뢰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에, 최근 범죄발생에 특히 더 중요한 원인변수가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 비행소년들의 반사회적인 태도나 책임의식 등 역동적 위험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가능한 많이 포함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역동적 위험요인 이외에도 비행전력 및 환경요인은 위험성평가도구들에 언제나 포함되는 범죄관련 정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그 이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평가도구들과는 달리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도구들에서 추가로 조사되는 가족기능이나 학교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은 비행촉발요인조사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도록 조정되었다(이수정, 윤옥경, 2003, 참조). 모든 자료에 대한 조사는 최근 위험성 평가도구들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권고되고 있는 통계(actuarial)방식을 택하였다(<http://www.johnhoward.ab.ca/PUB/PDF/C21.pdf#search='actuarial%20risk%20assessment'>). 이들 45문항으로 구성된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내적합치도는 .86,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련한 범죄심리사들로부터 얻어진 평가자간 신뢰도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비행촉발요인조사서

1. 가족의 구조 ()점	4. 가출경험 ()점
가정 결손 여부 및 생계 담당 보호자 등 4문항	가출경험에 대한 3문항
2. 가족의 기능적 역할 ()점	5. 비행전력 및 환경점수 () 총 점과 수()
가정불화, 학대, 애착, 전과자 유무 등 5문항	전과 및 본 범 내용, 조발비행 여부 등 10문항
3. 학교생활 ()점	6. 개인적 위험요인 ()점
무단결석, 적응문제, 진학의지, 교우관계 등 6문항	음주, 약물, 성격험, 준범의식, 책임감 등 17문항

† 구체적인 문항내용이나 채점방식 등은 비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본 논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소년의 문제소지를 좀더 진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실시되는 PAI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로서 총 3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타당성 척도,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표 6). 이 검사의 반응양식은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환산하는 T분포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인 기준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하위척도별로 .60에서 .88까지의 내적합치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주를 기간으로 두고 획득된 검사 재검사 신뢰도 지수는 .32에서 .91까지의 상관계수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영환, 오상우, 홍상환, 박은영, 2002).

종합심리검사를 비행성이나 범죄성, 나아가 재범가능성들과 연계시키는 연구들(이수정, 윤옥경, 2003, 참조)에서는 주요한 범죄예측요인으로서 공격성이나 반사회성 등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행촉발요인조사서에서 비위험군으로 분류된 소년들이 위험군으로 분류된 소년들보다 이들 속성을 측정하는 PAI의 하위척도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표 6. 종합심리검사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하위척도

	척도	문항수	척도 설명
타당성 척도	비일관성(ICN)	10	수검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는 반응을 했는지를 나타낸다.
	저빈도(INF)	8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 측정한다.
	부정적 인상(NIM)	9	일부러 불편함이나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경향 측정한다.
	긍정적 인상(PIM)	9	바람직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임상 척도	신체적 호소(SOM)	24	진환(SOM-C), 신체화(SOM-S), 건강염려(SOM-H)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기능 및 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 측정한다.
	불안(ANX)	24	인지적(ANX-C), 정서적(ANX-A), 생리적(ANX-P) 불안
	불안관련장애(ARD)	24	강박증(ARD-O), 공포증(ARD-P), 외상적스트레스(ARD-T)
	우울(DEP)	24	인지적(DEP-C), 정서적(DEP-A), 생리적(DEP-P) 우울
	조증(MAN)	24	활동수준(MAN-A), 과대성(MAN-G), 초조성(MAN-I), 고양된 기분, 과대성, 활동수준 증가, 초조성, 참을성부족 등과 같은 특징 포함
	망상(PAR)	24	과경계(PAR-H), 피해의식(PAR-P), 원한(PAR-R) 주변환경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 원한을 품는 경향,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 등과 관련
	정신분열병(SCZ)	24	정신병적 위험(SCZ-P), 사회적위축(SCZ-S), 사고장애(SCZ-T), 기이한 신념과 지각, 사회적 휴율의 저하, 사회적 무쾌감, 주의력 결핍 등의 내용을 포함.
	경계선적 특징(BOR)	24	정서적불안정(BOR-A), 정체성문제(BOR-I), 부정적 관계(BOR-N), 자기손상(BOR-S), 감정통제 어려움, 강렬하고 투쟁적인 대인관계, 정체감 혼란 자기파괴적인 충동적 행동 등을 포함
	반사회적 특징(ANT)	24	반사회적행동(ANT-A), 자기중심성(ANT-E), 자극추구(ANT-S).
	음주문제(ALC)	12	알콜 사용, 남용, 의존과 관련된 행동과 결과를 평가한다.
약물사용(DRG)	12	약물사용, 남용, 의존과 관련된 행동과 결과를 평가한다.	
치료 고려 척도	공격성(AGG)	18	공격적태도(AGG-A), 언어적공격(AGG-V), 신체적공격(AGG-P), 분노, 공격성, 적개심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 특징 측정.
	자살관념(SUI)	12	죽음이나 자살과 관련된 사고를 평가한다.
	스트레스(STR)	8	현재 혹은 최근에 경험한 생활 스트레스를 평가한다.
	비지지(NON)	8	친구 및 가족과 상호작용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
	치료거부(RXR)	8	심리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측정한다.
대인 관계 척도	지배성(DOM)	12	대인관계에서 독립성, 주장성, 통제성을 측정한다.
	온정성(WRM)	12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고 공감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3) 비행성 조사절차

범죄심리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행위험성 평가절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표 5에 제시된 비행촉발요인조사서와 표 6에 제시된 종합성격검사가 주요 평가도구이다.

비행촉발요인조사서는 일종의 의사결정을 위한 감별도구로서 비행성의 높고 낮음을 판별하는 기준점을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훈방 권고 등 의사결정과정은 이 도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으로 표 6에 제시된 종합심리검사는 보다 더 진단적인 의미의 평가도구인데, 해당 소년의 심층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반영하여 준다. 따라서 상담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데에 적절한 도구로서 사용할 것이다. 해당 소년의 비행성 및 인성 가정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서는 지능이나 적성, 혹은 다양한 문제행동가능성 및 부모에 대한 조사까지 수많은 자료가 조사되어야 하겠으나 주로 사건의 일차적 조사 및 조서작성 정도가 이루어지는 경찰단계에서의 면담을 포함하여 평균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 같은 조사 이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찰단계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의 대상자를 선별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과 가정의 보호기능,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의 결과, 나아가 종합성격검사에서의 이상소견 유무에 대한 확인으로 선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일 시범운영을 거쳐 범죄심리사들의 소년범조사제도가 신설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서와 비행촉발요인 조사와 종합성격검사를 토대로 한 범죄심리사의 소견서는 사건을 송치할 때 함께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이루어지게 될 피의소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수거된 이 같은 자료를 제외하고 부가적인 정보만 수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조사절차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범죄소년들이 비 정복 상담요원인 범죄심리사들의 면담절차에 매우 성실하게 응하여 준다는 것이었다. 면담과정에서는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양의 역동적인 범죄위험요인, 요구특성, 심리적 특질 등이 포착되었으며 이들은 비행촉발요인과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점수화되어 평가서에 반영되었다. 전문가진술서라고 볼 수 있는 범죄심리사들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문제시 되는 점은 이 보고서를 판독할 사람들이 법률전문가, 즉 비심리전문가란 점이었다. 그리하여 심리사들이 일반적으로 임상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보다는 판단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만을 정리하여 제공하여주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심층적인 조사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사에서는 초기 감별과정에서 필요한 준거기준만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가능한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결 과

표 7에는 경찰서에서 면담하였던 피조사청소년들과 세 준거집단 청소년들의 비행촉발요인 조사에서의 평균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는 이 결과가 도식화되어 있는데, 소년원과 교도소 등 시설에 수행되어 있는 소년들의 비행촉발요인 점수가 전과가 없는 일반 고등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더 높은 것을 할 수 있다 ($F_{3,413}=30.54, p<.001$).

표 7. 세 준거집단의 비행촉발요인조사 평균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반청소년	93	5.30(3.48) ^a	1	18
경찰서	197	9.54(7.36) ^b	0	31
소년원	61	13.77(4.67) ^c	3	24
교도소	80	12.40(6.20) ^c	1	26

^{a, b, c} 등 위첨자는 Scedge 검증 결과임

그림 3에는 각 준거집단의 비행촉발요인 점수에 대한 박스플롯이 제시되어 있다. 박스플롯은 점수의 평균만이 아니라 변산성에 대하여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일반 고등학생과 소년원, 교도소 수용자들에 비하여 지난 일년 동안 양 경찰서에 입건된 청소년들의 경우 더 다양한 비행촉발요인 점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경찰서에 입건되는 소년들의 경우 전과가 없는 일반청소년들만큼 비행성이 낮은 소년들부터 시설 수용이 될 만큼 비행성이 높은 소년들까지로 아주 다양한 분포를 지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들의 비행성을 토대로 하여 시설수용이 필요한 대상과 재비행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이론상 또한 통계학 상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다만 염려되는 바는 시설 수용된 소년들의 비행촉발요인 총점의 상한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소년들보다 오히려 조금 낮다는 사실인데, 이는 현재와 같은 조사방법 상의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시설 수용자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을 왜곡하여 비취지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응경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시설 수용된 소년들의 비행촉발요인 점수가 평가절하 됨으로 해서 변별기준점 역시 평가절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이 부분은 비행성에 대한 평가방식을 앞으로 좀더 다양하게 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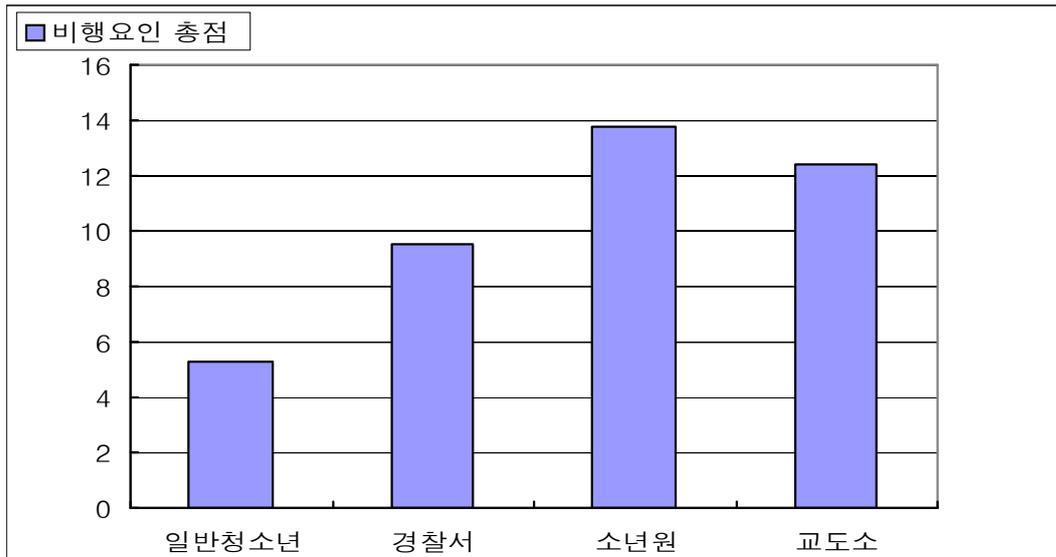


그림 2. 네 준거집단의 비행촉발요인 조사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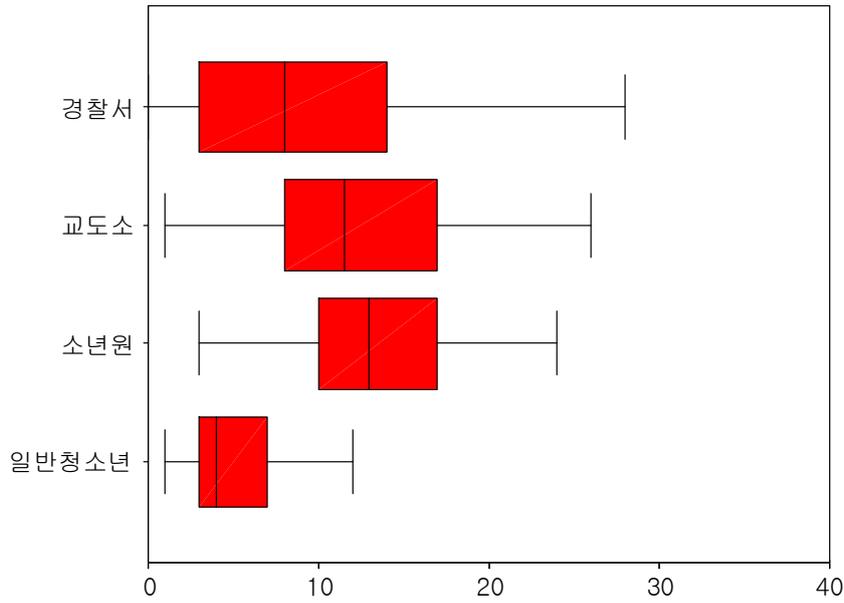


그림 3. 네 준거집단의 비행축발요인 조사점수의 박스플롯

표 8. 비행축발요인조사 변별기준점의 변별력

	AUC	SE	유의도	95%신뢰구간	sensitivity	1-specificity
변별기준점 6점	.814	.031	.000	.754 .875	.887	.258
변별기준점 7점	.811	.031	.000	.751 .871	.837	.215
변별기준점 8점	.817	.029	.000	.759 .874	.773	.140
변별기준점 9점	.803	.030	.000	.744 .861	.723	.118
변별기준점 10점	.771	.031	.000	.710 .832	.638	.097

표 8에는 현행 비행축발요인조사 결과가 가장 간략한 감별도구로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제안하는 판단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즉 통계분석(Receiver Operating Curve: 이하 ROC)을 통하여 감별의 기준점을 찾아내는 결과이다. ROC는 일종의 누적합수로서 변별도구가 전혀 예측력이 없는 경우 변별선 이하의 면적이 50% 변별선 이상의 면적이 50%, 즉 그림 5에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지표를 보인다. 하지만 변별기준이 우연수준 이상의 예측력을 지닐수록 변별기준으로 산출된 그래프 이하의 면적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그래프 이하의 면적은 정확한 예측력을 상징하는데, 따라서 표 8의 AUC(Area Under Curve)라는 지표가 변별기준점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ROC 분석결과는 비행청소년과 일반 비행범죄화 청소년을 변별함에 있어 비행축발요인조사서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9에 제시된 변별지표들을 살펴보면 변별기준점이 8점일 때 AUC가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이중

오류 즉 비행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다고 판단할 오류 예측율은 .14 정도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인 바, 이를 변별기준을 적용하자면 비행촉발요인 점수 8점 이하의 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재비행가능성이 낮으며 선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9점도 변별기준점 후보가 될 수 있겠으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루어질 재범연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검증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AUC가 최대였던 8점을 잠정적인 변별기준점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4에는 8점을 변별기준점으로 하여 수행된 ROC분석 결과가 그래프로 도식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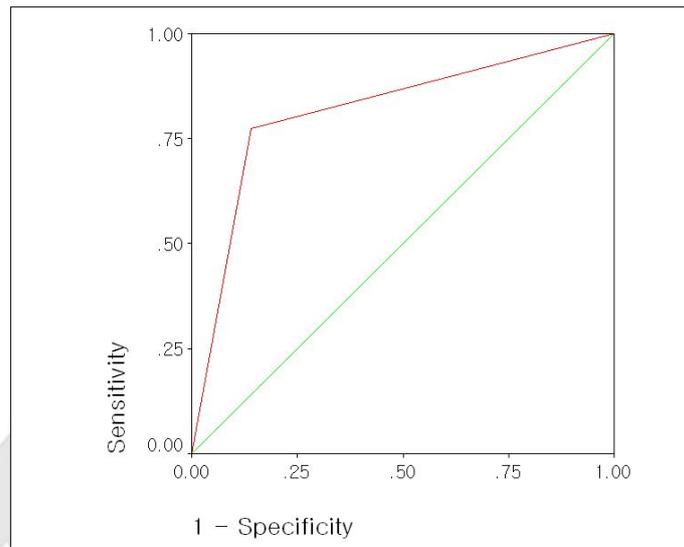


그림 4, 8점을 변별기준점으로 하였을 때의 ROC분석결과

그 다음으로는 경찰에 입건되어 면담하였던 소년들 중, 비행촉발요인조사 8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구분된 소년들의 성격검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지난 일 년 동안 두 군데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범 죄심리사들이 면담하였던 소년들 총 197명 중 재비행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별된 소년들은 총 100명(50.8%)이었고 비행성이 그래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 소년들은 97명(49.2%)이었다. 이들이 지니는 성격특성들 중 비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심리특성에 있어 재비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소년들에 비하여 더 친범죄적 성격특성을 지니는지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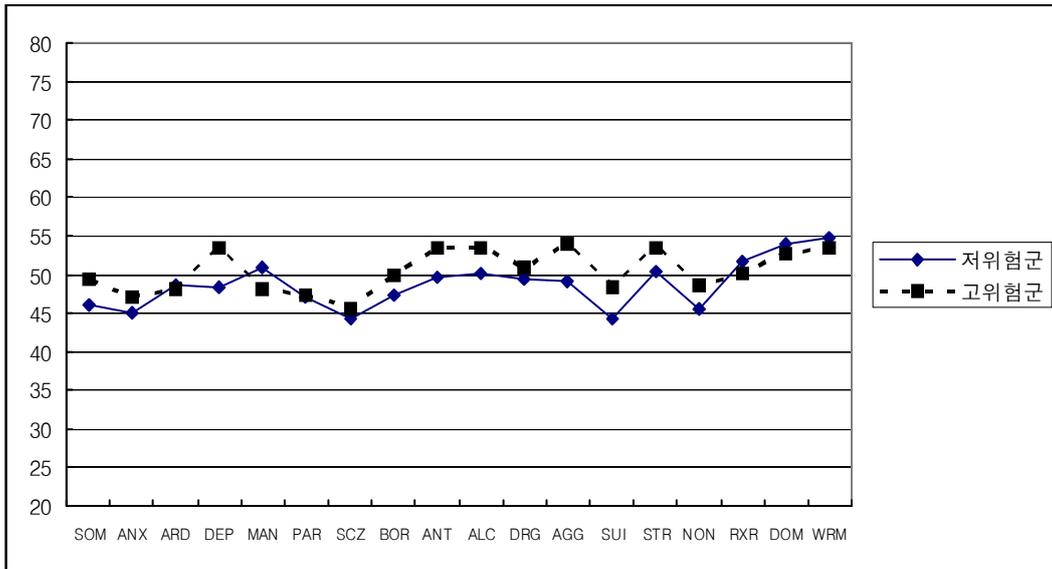


그림 5.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된 경찰입건 소년들의 성격특성

그림 5과 표 9에서는 비행촉발요인조사 결과 재비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평가된 경찰서 입건 소년들이 비행성이 낮다고 평가된 소년들보다 PAI의 일부 하위척도 상에서 더 많은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경찰서에 입건된 소년들 중에 지난 일년 동안 범죄심리사들의 면담 대상으로 선택된 소년들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성격검사 결과는 임상집단에 비하여 그리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즉 일반 청소년들의 평균인 표준점수 50점을 그리 크게 벗어나는 임상적 징후는 거의 모든 피조사자들이 지니고 있지 않았다.

표 9. 경찰입건 소년들 중 위험군 비위험군의 PAI 척도 평균점수와 효과크기

PAI 하위척도	저위험군(N=97)	고위험군(N=100)	<i>t</i> ₁₈₅	효과크기
SOM	45.93(8.92)	49.45(11.54)	-2.34*	-.34
ANX	45.00(10.32)	47.13(10.76)	-1.38	-.20
ARD	48.69(9.74)	47.99(11.12)	.46	.07
DEP	48.33(10.59)	53.49(11.48)	-3.20**	-.47
MAN	50.81(11.51)	48.11(10.62)	1.67	.24
PAR	47.10(9.12)	47.42(10.03)	-.22	-.03
SCZ	44.16(9.81)	45.60(12.05)	-.90	-.13
BOR	47.34(10.07)	49.89(10.78)	-1.67	-.24
ANT	49.64(9.82)	53.44(10.67)	-2.54*	-.37
ALC	50.25(11.13)	53.46(13.55)	-1.78	-.26
DRG	49.68(8.78)	50.88(10.04)	-1.09	-.13
AGG	49.06(10.08)	54.07(11.41)	-3.18**	-.47
SUI	44.19(8.04)	48.25(11.09)	-2.88**	-.42
STR	50.47(10.93)	53.46(11.67)	-1.81	-.26
NON	45.56(9.38)	48.53(10.47)	-2.04*	-.30
RXR	51.68(9.72)	50.22(12.23)	.90	.13
DOM	53.91(9.56)	52.70(9.54)	.86	.13
WRM	54.83(10.98)	53.38(11.94)	.86	.13

p*<.05 ** *p*<.01 **p*<.001

하지만 변별점 8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비행요인을 더 많이 지닌다고 판단된 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소년들의 성격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몇몇 하위척도 상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범죄행동과 연관성이 있는 반사회성, 경계선적 성격, 약물에 대한 취약함, 공격성 등에서 비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신건강 상으로도 더 많이 부적응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스트레스성 심인성 장애, 우울, 자살에 대한 사고, 비지지적인 환경 등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비행촉발요인 조사의 결과 선정된 재비행 위험집단이 비행가능성이 낮은 집단보다 성격적으로도 더 부적응적이란 사실을 보여주며 이런 성격특성은 잠재적인 재비행가능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들 중 어떤 소년들에게는 상담이 필요하고 어떤 소년들에게는 사회복지적 지원이 필요한지는 개인별로 다시 상세한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결정되어야겠으나, 현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비행촉발요인 조사서는 비교적 소년들의 비행위험성을 민감하게 포착해내는 도구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중 비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년들에게 있어서 반사회성과 우울이나 스트레스장애 지수가 동시에 높아지는 점은 단지 시설 처우 아니면 별다른 전도대책 없는 귀가조치가 전부인 현재의 소년보호 대책이 전혀 소년들에게 필요한 사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장기간의 열악한 가정환경과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해진 경찰서 입건 청소년들에게는 가능하다면 즉각적으로 심층적인 상담이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들의 심리적인 부적응에 조기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소년들은 자신의 심리적 부적응을 비행 행동 등으로 외현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소년 다이버전 제도를 위하여 소년범들의 비행위험성에 대한 조기 감별도구를 개발하고 그 판단기준점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비행력이 아주 높은 시설 수용 청소년들과 무전과 일반 학생들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이들의 비행을 나뉠대로 잘 변별해주는 유용한 기준점을 ROC분석 결과 찾을 수 있었다. 나아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토대로 구분된 경찰 입건 소년들 중 비행위험성이 높은 소년들은 비행과 연관하다고 확인된 성격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시에 몇 가지 정신건강 지표상에서도 비행위험성이 낮은 소년들보다 문제소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차후에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시사하여 준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하는데, 우선 시설에 수용된 소년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불가피한 반응경향성으로 해서 변별기준점이 약간 평가절하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선택된 변별기준점이 8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하게 하는데, 8점이라는 점수는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의 총점이 45점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점수이다. 따라서 8점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높지만 실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소년들은 현재의 저위험군 안에 포함이 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본 연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앞으로 수행하게 될 재범연구를 통하여 변별기준점을 재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8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의해 판단된 소년의 약 반 수 정도가 저위험군으로 구분되며 이를 전체 소년사건을 대상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소년들이 앞으로의 훈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8점이라는 점수가 기준점으로서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

소년사건의 대부분을 접수하게 되는 경찰에게는 현행법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경찰은 실무에 있어서 소년경찰직무규칙과 범죄수사규칙에 의하여 소년의 불량행위를 단속하고 훈방처리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과 소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선도대책도 적용받지 않고 귀가 조치되는 소년사건의 수는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이들에게 있어서 사법절차란 번거로운 행정절차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결국 장기간의 행정절차 속에서 반복적인 조사과정을 통해 범죄자로서의 낙인과, 직접 경험을 하고보니 법이라는 것이 그리 심각한 통제수단이 아니라는 인식만을 안은 채 그대로 다시 원래의 비행환경으로 방출되고 있다. 10%도 안되는 소년사건 당사자만이 시설처우 등 구체적인 교화대책을 적용받지 나머지 소년들은 결정을 유예 받거나 사회내 처우를 받는다. 하지만 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다른 허점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관대한 처분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율만 살펴보더라도 효과성이 없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조금 더 많은 소년들을 시설 내에 격리시키는 것은 소년의 재적응을 위하여 더더욱 권고될 사안이 되지 못하는데, 이런 저런 고민 끝에 결국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전문가들에 의한 조기개입이다.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시행되는 비행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공식적인 사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소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사법적, 비공식적 절차에 의한 조속한 조치, 즉 전환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제도의 주된 의의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본 논문에서는 소년의 비행성 평가와 선도 및 상담에 민간전문가가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비행성평가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 포함된 소년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비행성평가도구는 재범연구 등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훈방 대상이 되는 소년의 선도방안에 대하여서는 소년의 요구특성에 보다 민감한 지도방법도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후의 논의가 수없이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의 취지 면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경찰단계에서의 선도는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치료 및 예방의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범위를 현행 형법이나 소년법보다 좀더 융통성 있게 잡을 수 있을 것인데, 예컨대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12세 미만의 소년들이나 참고인으로서만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는 성매매 청소년들까지 선도가 필요하다면 이들을 모두 처우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한 개인상담의 수준을 넘어서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데, 이런 집단 프로그램들은 소년들에 대한 사회지지 기반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년범죄나 소년비행으로 크게 고심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은 전 경찰부서에서 소년비행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30년 캘리포니아는 특별 "청소년 보안국"을 창설하였고, 그 뒤로 많은 경찰기관에서 청소년 처우에 있어 특별 법령안을 마련하고 소년법에 관한 한 선도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는,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을 처우하는데 있어서의 특별 법령안을 가지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1993). 나아가 지역에 따라 규모는 다르지만 청소년 선도 경찰관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 경찰체육연맹(PAL), 약물남용 극복교육(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등 비행예방업무와 소년법원 송치업무, 경찰과 학교간의 연락업무, 조사업무, 통제업무와 같은 범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선도 경찰관은 다른 부서의 경찰관과는 달리 소년비행 예방과 선도에 특수한 기술과 재능이 있는 경찰관들로 선발 배치된다. 이때 아동발달, 심리학, 범죄심리, 사회학, 그리고 상담학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특별히 훈련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데, 현행 범죄심리사들의 역할을 청소년 선도경찰관이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는 범의 집행과 범죄예방 이라는 2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인데(Walker, 1985),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조직의 어떤 부서보다 여성 청소년계가 이런 두 기능을 모두 담당하여야 할 부서가 아닌가 판단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국내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소년에 관한 범죄예방의 업무를 범죄수사가 주요 임무인 경찰로 흡수하는 것 보다는 이미 제도화된 민간조직에 위임하고 그 연결고리로서 범죄심리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비슷한 사례를 국내에서 찾아보자면 직업상담사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MF로 급증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함에 있어 기존의 노동부 행정조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직업적성의 평가 및 진로지도 업무를 직업상담사들이 도맡아 원활하게 수행해 낸 사례가 있다. 범죄심리사 역시 직업상담사와 유사한 평가 및 지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에 소년의 비행위험성 평가와 재범예방 지원을 이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할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경찰의 청소년 선도 업무의 전문화와 나아가 우리나라 소년보호를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백서 (2003). 경찰청.
- 김지선 (2000). *소년보호처분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법원 사법연감 (2002). 법무부.
- 오영근 (2004). *소년사법과 청소년 인권*. '2004년도 선택전문교육과정 소년보호분류심사관리자 반 교재집 3-42. 법무연수원.
- 이수경, 윤옥경 (2003). *범죄위험성의 평가와 활용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3), 99-126.
- 이윤희 (1999). *형사정책*. 박문각.
- 조준현 (2003). *범죄원인론의 가능성과 한계*. 교정연구, 19, 253-278.
- Gendreau, P. (1996). Offender rehabilitation: What we know and what needs to be don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144-161.
- Hess, D. (2000). *Juvenile Justice*, 3rd ed. pp. 30.
- McCord, J., Widom, C.S., & Crowell, N.A. (2001), *Juvenile Crime, Juvenile Justic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Van Voorhis, P., Braswell, M., & Lester, D. (2000). *Correctional Counseling and Rehabilitation*. 4th (Ed.), OH.:Anderson.
- Walker, C. P. (1985). Emergency Arrest Powers. *Northern Ireland Legal Quarterly*, 35, 145-155.
- <http://cyber.cheongju.ac.kr/~welfare/data/admin/admin13.html>
- <http://www.johnhoward.ab.ca/PUB/PDF/C21.pdf#search='actuarial%20risk%20assessment'>

Development of a Risk Assessment Tool for Juveniles at Police Investigation

Soo Jung Lee · Eun-Kyung Cho

Criminologic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how to set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 of juvenile delinquents at the intake stage of police, specifically for dismissing cases with the condition of admonition by civilian expert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forensic psychology trainees assessed personality and risk factors related to juvenile recidivism. In addition juveniles institutionaliz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high-school kids also participated in this survey. ROC analysis was applied to produce a cutoff-score discriminating risk level of institutionalized juveniles and non-delinquents. The fact that juveniles with high risk scores had personality more vulnerable to delinquency presents the present risk assessment procedure might achieve the satisfactory degree of validity.